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8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정필모·김성주·홍성국

변재일 • 이학영 • 김경만

박홍근 • 박광온 • 윤재갑

이용우 • 권인숙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②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
	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
	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
	<u>가를 한 것으로 본다.</u>